

[별첨]

Myanmar Companies Law 주요 변경사항 요약

시행일 : 2018. 8. 1.(예정)

공포일 : 2017. 12. 6.

	舊회사법	新회사법
외국인 지분취득이 가능한지	외국인은 내국회사 (Myanmar Company)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(정책적으로 금지되어 있음)	- 외국인이 내국회사(Myanmar Company)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- 하지만, 외국인 지분비율이 35%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내국회사가 아니라 외국회사(Foreign Company)가 됨 - 지분비율 35% 이하 : Myanmar Company - 지분비율 35% 초과 : Foreign Company ➔ M&A, 부동산 개발 활성화 기대됨
부동산양수도 제한법	부동산을 소유한 미얀마회사 발행 주식 원칙적 취득 금지	- 부동산을 소유한 미얀마회사 주식을 <u>35%까지</u>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음 ➔ 외국인이 간접적으로 부동산 취득 가능
미얀마투자법과의 관계	내국인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	내국인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 35%까지 취득 가능
증권시장	주식 투자 불가	- 주식 투자 가능(35%까지) ➔ 주식 시장 활성화가 기대됨
주식 액면가	액면가 있음	액면가 제도 폐지
출자 방식	- 현금출자 - 현물출자 가능하나 예외적임	- 현금 외 출자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였고, 출자 대상에 제한이 없음 ➔ 현금 외 출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
주주 數	2인 이상	1인 이상 ➔ 기존 nominee 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함

	舊회사법	新회사법
이사 (상주 요건)	➢ 거주 요건 없음	➢ 연간 183일 이상 거주(시행일 or 설립일로부터)하는 ordinary resident director가 1인 이상 필수 ➢ 내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/외국인 가능 ➔ 이사 교체 시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
이사의 의무	➢ 약식으로 존재	➢ 선관주의의무, 충실의무, 지위남용금지 의무, 정보의 사적 유용 금지 등 의무, 법령준수 의무, 무모한 거래의 회피 의무, 회사의 채무 부담과 관련한 의무, 이익충돌사항 공개의무 ➢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됨(제190조) ➔ 이사회 등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검토 자료 등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음
수종의 주식	➢ 근거는 있으나 활용도 낮음	➢ 종류주식, 상환주식,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(우선주),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, 무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➢ 신주인수 옵션 증권,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조건의 증권, 기타 이자증권 등 발행 가능 ➔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여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됨
자본 감소 요건 완화	➢ 법원의 결정 필요	➢ (법원의 결정 없이) 납입자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감자하는 것을 허용 ➔ 기존에는 배당 이외에 자본금 회수 방법이 없었음. (아래 자기주식 취득과 함께) 자본금 회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.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
자기주식 취득 가능	➢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	➢ 자기주식 취득 가능 (소정의 요건 있음) ➔ 자본금 회수 방안. 주주가치 고양 방안으로 활용 가능
배당 요건 강화	➢ 이익잉여금 존재하면 가능	➢ (i) 배당 후 지급가능 기준(solvency test)을 충족, (ii) 배당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며, (iii) 채권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중대하게 손상하지 않아야만 함 ➔ 강화된 요건을 확인하여 줄 감사인의 역할이 중대해질 것으로 보임

	舊회사법	新회사법
부담(Charges)에 대한 등록 의무 강화	➢ 부채에 대한 등록 의무 있었으나 사문화되어 있었음	➢ 저당권(mortgage) 또는 부담(Charges)을 등록하여야 하고,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됨 ➔ 채권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보호 기대
소수주주 보호	➢ 별로 없음	➢ 소수주주 보호 규정 강화(대표소송제도 등)
지점장, 대표사무소장 상주 요건	➢ 거주 요건 없음	➢ 연간 183일 이상 거주(시행일 or 설립일로부터)하는 ordinary resident director가 1인 이상 필수 ➢ 내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/외국인 가능 ➔ 교체 시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
지주회사	➢ 개념 없음	➢ 지주회사 개념 도입
소규모회사	➢ 개념 없음	➢ 직원 30명, 매출 5천만짜트 기준으로 이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 등 경감
신고 서식	➢ 舊법에 따름	➢ 新법에 따라 별도로 공표 예정
Permit to Trade	➢ 유지	➢ 폐지

[담당 변호사]

고세훈 수석변호사

E. shko@jipyong.com

M. +95-99-7181-5829

지평 미얀마 현지법인(JIPYONG MYANMAR Limited)

No. 140/A, Than Lwin Road, Bahan Township, Yangon, Myanmar

T. +95-1-510366 F. +95-1-526381 E. myanmar@jipyong.com http://www.jipyongmyanmar.com